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16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는 가출, 성매매, 빈곤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취약한 위기 십대여성에게 의료지원, 정신건강 상담, 성·건강교육, 기초생활지원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건강특화 시설임
- 나.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현장경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 나. 위탁유형 : 시설위탁
- 다. 위탁기간 : 3년(2022.7.5.~2025.7.4.)
- 라.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는 가출, 성매매, 빈곤 등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산부인과·치과 등 전문진료 및 정신건강 상담, 심리·정서 지원, 성·건강 교육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
- 또한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위기 십대여성의 욕구를 반영하여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다양한 민간자원의 활용 및 연계, 해당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마. 위탁사무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시설 관리·운영
- 산부인과, 치과 등 전문 의료지원
-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검사, 심리·정서지원, 사춘기(성건강) 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 생필품 및 월경용품 등 기초생활지원, 건강돌봄 등 건강지원 사업
- 유관기관 실무자 건강지킴이 교육,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등
-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지원을 위해 시와 상호 협의한 사항

바. 위탁사무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5길 34(서교동)
- 규모 : 523.89㎡(본건물, 별동 총 2개동)
- 시설현황 : 산부인과·치과 진료실, 정신건강 상담실, 원예치료실, 성교육장, 멀티룸, 식당, 샤워실, 사무실 등
- 인력현황 : 8명
  -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및 간호조무사 등 6명

사. 수탁기간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아. '22년 소요예산(안) : 780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호 및 제9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2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21년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1.10.6.(적정)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권익보호담당관 늘푸른여성팀 심효진(☎2133-5334)